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는 중구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38 초동공영주차장 부지 상에 “서울시”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단, 지상의 영구시설물은 공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중구”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38 초동 공영주차장 부지 상에 “서울시”에서 ‘서울 시네마테크’(영구시설물)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상 토지 및 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 ① 토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38 초동공영주차장(대지면적 : 804.1㎡)
- ② 영구시설물(공용건축물)
 - 용 도 : 서울 시네마테크
 - 건축면적 : 482㎡ 내외
 - 규 모 : 지하1층 ~ 지상 11층(연면적 5,000㎡)
(단,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상 층수와 연면적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건립목적 : 영화·영상문화의 거점인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을 통해 영화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제3조(시설의 건립)

- ①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공사는 “서울시”가 시행한다.
- ② “서울시”는 시설물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 민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③ “서울시”는 공사 착공, 준공 및 운영개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구”에 사전 통보한다.



제4조(소유권 및 존속기간) ① 축조되는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함께 “서울시”의 소유로 귀속된다

② “서울시”는 서울 시네마테크 건축물 외 “중구”의 토지에 “지상권” 등 어떠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단, “중구”의 사전승인(계획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중구”는 “서울시”가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을 위해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하되 별도의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단,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서울시”는 “중구”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구”는 제9조 제1항의 각 호의 해지 사유가 없는 한 5년 간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한다.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다.

제6조(대체주차장 마련) ①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라 철거될 초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요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200㎡당 1대) 상 최대면수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여야 하며, 인근 민간 공영주차장과의 협약 등을 통하여 주차수요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주체) 서울 시네마테크 준공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가 시설을 관리하고 제2조 제2항의 건립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운영) 서울 시네마테크의 관리·운영비는 “서울시”가 부담하며, 서울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협약의 중도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구”는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시네마테크 건립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울시네마테크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서울 시네마테크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4. 공공계획에 의해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가 필요한 경우
5. “서울시”가 본 협약에 명시된 책임 및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6. 기타 “서울시”와 “중구”가 종료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경우

② “서울시”는 “서울시”의 과오 등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사유 발생시에는 “중구”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등) ①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 축조된 영구시설물은 “서울시”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상복구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서울시”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구”가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서울시”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①항 제2호, 제5호, 제6호에 의해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중구”는 상호 합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르거나 상호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서울 시네마테크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중구”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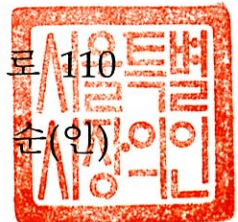
② 본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7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박원순(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인)

